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 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 신설).

II. 검토 의견

1. 현행법상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약칭 조문 정비 필요(안 제45조제5항 및 현행법 제47조제2항제1호)

안 제45조제5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약칭하고 해당 조문 이하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따라서, 현행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법	수정의견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u>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u>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	수정의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과징금 부과 금액 산출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필요

안 제48조의8제1항²⁾ 및 안 제50조의9제1항³⁾에서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매출액”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⁴⁾

따라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⁶⁾, 「방송법」⁷⁾ 등 다수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정안

- 2) 안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3) 안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4) 참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3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음.
- 5)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6)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6 이하에 해당하는</u>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7) 제85조의2(금지행위)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정의견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 산정기준 규정의 체계정합성 제고 필요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48조의8제2항에서는 침해사고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⁸⁾ 그러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50조의9제3항⁹⁾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오로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¹⁰⁾, 「자본시장과 금융투

8) 안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안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업에 관한 법률」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2) 등 다수의 과징금 부과 관련 입법례에서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부과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있어 침해 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따라서, 법률 간 및 법률안 조문 간 체계정합성의 제고를 위하여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u><신설></u>	제50조의9(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제39조(과징금)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노력의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정의견
	<u>과실 여부</u> <u>3.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의 규모</u> <u>4.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u> <u>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u> <u>6.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u> <u>7.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u> <u>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 기관 의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사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정보주체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임에도, 개정안의 경우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48조의8 신설),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의무 도입(안 제48조의10 신설)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임. 특히, 반복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 관련 조문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법의 과징금과 중복되고, 안 제48조의8제4항은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 대한 감액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액조항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대한 고려사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해당 감액 조항을 보호법 관련 사항 적용배제 조항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48조의8제4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 정 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정의견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위원 박 혜 진)

- 13)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